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286호

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공택지 매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임.

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. 3.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

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 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  
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
(전화 044-201-3438, 3450, 팩스 : 044-201-5661)

### 3. 기타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